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형집행정지자 등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근거 마련〉
■ 박균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467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형집행정지자등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균택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6. 1. 30.
3. 회 부 일 : 2026. 2.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제471조는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수형중인 사람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더 이상 형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질병 등의 사유로 형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에 대하여 도주 우려 및 관리·감독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고 수형중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도주 우려 등을 해소하고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9부터 제31조의13까지 및 제38조의2 신설).

III. 검토의견

1. 형집행정지자등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근거 마련

□ 개정안은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70조 또는 제471조에 따른 형의 집행정지¹⁾, ②제492조에 따른 노역장유치 집행의 정지 및 ③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치료감호 집행정지²⁾를 지휘하는 경우 그 대상자(이하 “형집행정지자등”이라 한다)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안 제31조의 9 등).

1) 「형사소송법」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치료감호의 집행정지)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같은 조에 따라 검사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이 정지된 자에 대한 관찰은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의 예에 따른다.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5장의3 형집행정지 등과 전자</u> <u>장치 부착</u>
<u><신 설></u>	<u>제31조의9(형집행정지 등과 전자</u> <u>장치 부착) ①</u> 검사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제471조에 따라 형의 집행정지를 지휘하는 경우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할 수 있다.
	<u>②</u>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따라 노역장유치의 집행 중인 사람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그 집행의 정지를 지휘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할 수 있다.
<u><신 설></u>	<u>제31조의10(전자장치 부착의 집행)</u> ① 검사는 제31조의9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경우 지체 없이 형집행정지 통지서를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현행	개정안
	<u>장애에 통지하여야 한다.</u> ② <u>제31조의9에 따른 형집행정지자는 검사가 지정한 일시까지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u> ③ <u>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집행정지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중병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하여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과 보호관찰관의 현장방문에 의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집행정지자는 현장을 방문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u> ④ <u>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의9에 따른 형집행정지자의 형집행정지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신설>	⑤ 전자장치 부착 집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11(형집행정지 조건 위반 상황 통지)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형집행정지자가 제31조의9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거부하거나 제31조의1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전자장치 부착을 통하여 형집행정지자에게 부과된 주거의 제한 등 형집행정지 조건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검사와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검사는 형집행정지 조건을 변경하거나 형집행정지를 연장 또는 취소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31조의12(전자장치 부착의 종</u> <u>료) 제31조의9에 따른 전자장</u> <u>치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u> <u>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u> <u>집행이 종료된다.</u> <u>1. 형집행정지자에 관하여 사면</u> <u>이 있을 때</u> <u>2. 형집행정지가 취소된 때</u> <u>3. 형집행정지기간이 종료된 때</u> <u>4. 형집행정지 조건이 변경되어</u> <u>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u> <u>게 되는 때</u>
<u><신 설></u>	<u>제31조의13(형집행정지자 수신자</u> <u>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①</u> <u>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의9</u> <u>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한 형</u> <u>집행정지자의 전자장치로부터</u> <u>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u> <u>그 자료(이하 “형집행정지자 수</u> <u>신자료”라 한다)를 보존하여야</u> <u>한다.</u> <u>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u> <u>호의 경우 외에는 형집행정지</u> <u>자의 수신자료를 열람·조회·</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u> <u>1. 형집행정지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u> <u>2. 제38조의2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자료로 사용하는 경우</u> <u>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u> <u>1. 선고된 형이 사면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때</u> <u>2. 전자장치 부착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u> <u>④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7항 및 제16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u> <u>제38조의2(벌칙) ① 제31조의9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한 형집행정지자가 제31조의1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 부착 집행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u>

현행	개정안
	<u>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u>

□ 현행법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형집행정료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³⁾,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전자

- 3)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 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장치 부착 근거는 마련하고 있지 않음.

- 현행법은 전자장치 부착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요소에도 불구하고⁴⁾ 특정범죄로 범죄의 종류를 한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전자장치 부착의 요건으로 규정하여 특정 강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안은 질병 등의 사유로 형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 등에 대해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정지기간 동안 형집행정지자들의 도주를 조기에 인지하거나 소재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범죄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를 이해할 수 있음.

- 2021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사람이 정지 기간이 끝났음에도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하였음.

- 2017년과 비교하여 형집행정지 인원이 최근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형집행정지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집행정지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은 인정됨.

2.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3.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윤영철,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비판적 소고,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3호, pp209-210

〈2017년~2025년 형집행정지 현황〉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394	373	370	405	555	972	592	574	565
질병	347	331	349	367	472	552	453	531	528
잉태	10	9	11	8	7	8	13	6	9
기타	37	33	10	30	76	412	126	37	28

자료 : 법무부

□ 다만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치료감호와 노역장유치 집행정지 대상자를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입법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증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형집행정지자등의 도주 우려 등을 해소하고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추가 범죄 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이지만, 최근 5년간 치료감호 집행정지자의 경우 도주 인원 및 재범 인원이 전무하고, 노역장유치 집행정지자에 대해서는 관련 통계가 없음.

〈2021년~2025년 형집행정지 등 후 도주 및 재범 인원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형집행정지	도주 인원	1	8	7	3	4
	재범 인원	0	2	1	0	0
치료감호 집행정지	도주 인원	0	0	0	0	0
	재범 인원	0	0	0	0	0
노역장유치 집행정지	도주 인원	통계 없음				
	재범 인원					

자료 : 법무부

□ 둘째, 개정안은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지휘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도주 우려·재범위험성·범죄의 중대성·집행정지 예상기간·대상자의 건강상태 등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및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 중 형집행정지와 외관상 유사한 가석방 대상자의 경우, 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예정자의 범죄내용 및 개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5) 제22조(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② 심사위원회는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 예정자의 범죄내용, 개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석방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 셋째, 형집행정지자들의 집행정지 기간 동안 도주 우려 및 관리
· 감독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을 활용하는
것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확대되고 피부착자가 증가하면서 피부착
자를 실효성 있게 관리하지 못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는 업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들이 피부착자에 대한 지도·
감독뿐만 아니라 준수사항 위반 시 수사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점 및 외국과 비교했을 때 1인당 사건 수가 많다는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⁶⁾

□ 추가적으로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여부의 결정권자를 검사로
규정하고 있어, 검사가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대상자의
기본권을 별도로 제한하는 전자장치 부착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사후심사나 당사자의 불복절차 등 절차적
통제장치가 필요하지 않은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부착명령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부착명령 선고권자를
규정하고 있음. 형집행정지종료자의 경우 검사가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함.⁷⁾

6) 국회입법조사처,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NARS 현안분석, 제212호, pp6-7

7)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
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
한의 2배로 한다.

가석방 예정자, 치료감호 가종료자 및 보호감호 가출소자의 경우
각 위원회가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⁸⁾

〈전자장치 부착 유형별 결정 절차 및 결정 주체〉

구분	대상	청구권자	선고권자
현행법	형집행종료자	검사	법원
	가석방 예정자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가종료 등	—	치료감호 심의위원회
	집행유예자	—	법원
	보석	—	법원
	스토킹행위자	—	법원
개정안	형집행정지자등	—	검사

문 의 처

02-6788-5075

8) 제22조(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①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①「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이하 “가종료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